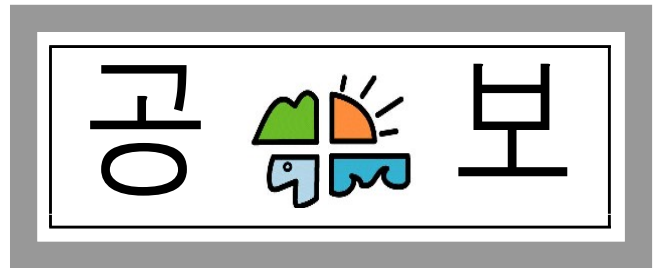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37호 2019년 12월 13일(금)

조 례

-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 5
-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7
-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11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속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

입법예고

-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21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16호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 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1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①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18호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법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소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19호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20호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은행(이하 “임대은행”이라 한다)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보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은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시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은행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위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소장은 매년 임대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농업인 성·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2대(동일기종 제외) 기준으로 2일 이

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고·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은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시 금고 또는 지역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전액감면 :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비치대장) 임대은행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5조(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임대은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대은행 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기계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21호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을 “농업 생산성 및 농업소득액이 낮은 농산물에 대한 건조비용, 유통물류비용 등 소득보전사업”으로, 제1항제5호 중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경영체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경영체 및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1항제6호 중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작물,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

로, 제1항제7호 중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산업”을 “사료, 비료, 농자재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을 “농업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채소·과수·특작, 화훼류의 우량종자·종묘·묘목 및 육묘 공급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속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속초박물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06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속초박물관	박물관	노학동 736-1대 일원	154,428	증) 446	154,874	2002.12.2. (속초시 고시 제2002-49호)	

■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속초박물관	◦ 문화시설 구역 변경 - 면적 : 154,428m ² → 154,874m ² (증 446m ²)	◦ 시립박물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환경 여건등을 개선하고자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시행(2019.12.12.)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심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등 (안 제3조 ~ 제7조)
- 다.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안 제8조 ~ 제11조)

4. 자치규칙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전화: 033-639-2673,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033-639-2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소속 3급 이상 직원
3.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4. 속초시 소비자단체 등 수급자 대표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 또는 긴급 안건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의결의 경우: 원안 의결
2. 부결의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양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계자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 결산 미승인 등), 평가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20
	☐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예: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20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10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예: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15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15

(15점)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예: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예: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예: 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예: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5점)	☐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 계획(예: 주기적 안전점검, 전문직 고용 등) ☐ 수요자(입소자 등)를 위한 건강,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5
합 계: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20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